

2021년 테마형사소송법 판례.기출 증보판 정오표(추가2)

<제1권>

p.163. 문1 해설 ②여백에 ※추가

※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(2016헌마263)에 따라 통신비밀보호법 제12조의 2가 신설되었다.(신설 2020.3.24.).

p.163. 문1 해설 ② 두 번째 ►의 내용을 삭제한 후 아래 내용으로 대체

►이와 같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‘인터넷 통신망을 통하여 흐르는 전기신호 형태의 패킷(packet)을 중간에 확보하여 그 내용을 지득하는 이른바 ‘패킷감청’도 통신비밀보호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는 경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된다’는 종래 대법원 판례(대판 2012.10.11., 2012도7455)는 그 의미를 잃었다고 볼 수 있었으나,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에 그 취지에 따라 법적 통제수단인 통신비밀보호법 제12조의 2를 신설 한 바 있으므로 이제는 인터넷회선감청(패킷감청)의 위헌성은 해소되었다고 보여진다.

p.167. 문10. 해설②의 내용을 삭제하고 아래 내용으로 대체.

②출제당시 대법원판례에 의하면, ‘인터넷 통신망을 통한 송·수신은 통신비밀보호법에서 정한 ‘전기통신’에 해당하므로 인터넷 통신망을 통하여 흐르는 전기신호 형태의 패킷(packet)을 중간에 확보하여 그 내용을 지득하는 이른바 ‘패킷 감청’도 같은 법 제5조 제1항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는 경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된다’는 입장이다.(대판 2012.10.11., 2012도7455).

정답 정답없음 ⇨ 출제당시 판례에 의할 때 정답 ②

p.169. 문12 해설 ㉠ 내용을 삭제하고 아래 내용으로 대체.

㉠○: 출제당시 판례에 의할 때 타당한 내용이다(대판 2012.10.11., 2012도7455).

정답 ① ⇨ ②